

##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 황 용 석

이 연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구했다. 주요 연구문제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두 개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 둘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추구하는 정책적 효과와 정책도구의 개념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 가운데 추적가능한 가명성(신원 확인이 된 가명 또는 id의 사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이버문화의 부정적 현상들이 추적가능한 가명성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범죄자의 추적에는 용이하지만 사이버 문화의 개선에는 그 효과가 미지수이다.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판례와 정책들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한, 즉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다. 국가가 강제로 법을 동원해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문키워드 :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표현의 자유

영문키워드 : Internet, Real-Name System, Anonymity, Freedom of Speech

\*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은 사회적 여론이 소통되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하나이다. 우리사회에서 인터넷매개커뮤니케이션(*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매개하는 실재를 인지하고 그 속에서 매개된 자아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등장은 기대의 이면에 항상 우려를 동반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논쟁을 벌일 때 어떠한 메모나 대본을 사용하지 않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그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기록할 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진실은 어떤 장치의 매개 없이 단순하게 말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도 언어가 쓰기라는 기술(*technology of writing*)에 의해 매개되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글쓰기가 문화저장장치인 기억의 힘을 잃게 한다고 걱정했고 작문된 문서가 대중을 현혹케 해서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본성이 문서로 고정되는 것을 우려했다. 플라톤은 진실한 자아는 문서라는 기술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개인적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Wood & Smith, 2005).

플라톤의 걱정은 오늘날 인터넷기술에 대해 쏟아지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전달하고 저장하는 수많은 매개 기술에 둘러싸여 있다. 너무 많은 기계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에 자아를 표현하는 선택범위도 많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매개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이 갖는 기술적 특성은 상호작용에 필요한 개인의 단서나 기호가 열어짐으로써 익명성의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Ward & Smith, 2005). 익명성은 인터넷커뮤니케이션에 명암을 모두 가져주었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원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며, 참여자 모두의 신분을 평등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익명성은 발언기회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Christoperson, 200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공간은 사회적 규범이 상실되면서 비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유발되기도 한다. 익명성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익명성은 사회규범을 약화시키고 상호성의 기반이 되는 상호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비판한다(Danielson, 1996; Sproull & Kiesler, 1991). 특히, 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려진 익명적 글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저질 표현, 욕설 등의 피해 등의 사례가 늘어가면서 게시판 문화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었다.

잘못된 인터넷 익명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국내에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표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양분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2004년 3월 9일 개정 선거법에 인터넷실명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2006년 12월 22일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발효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국가가 인터넷게시판에 대해 실명제(일부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를 도입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 연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익명성과 일탈행위간의 상관관계, 제도적 도구로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도구적 타당성,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개인정보의 결정 주체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사용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익명성과 일탈행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이다. 사이버 범죄를 논하는 곳에서 익명성은 언제나 단골로 거론되었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성과 일탈행위의 인과성을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익명성과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경험적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두 개념들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추구하는 정책적 효과와 정책 도구의 개념적 불일치가 존재하는가이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 가운데 추적가능한 가명성(신원 확인이 된 가명 또는 id의 사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이버문화의 부

정적 현상들이 추적가능한 가명성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범죄자의 추적에는 용이하지만 사이버 문화의 개선에는 그 효과가 미지수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가이다.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본권의 제한 조건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이 글에서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정책과 판례를 중심으로 표현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한 즉,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현행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국가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게시판 공간은 그것이 비록 익명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은 이 공간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인터넷게시판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갖는 문제를 기술할 것이다.

## 2.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도입배경과 내용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등장배경은 익명성이 갖는 폐단을 전제로 해서 출발한다. 이 제도는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제도이다. 특히,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상희, 2003). 인터넷 공간은 커뮤니케이터의 흔적을 변환·삭제할 수 있기에 법집행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일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다(변순용, 2003). 그런 점에서 범죄 관리 비용의 증대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는 주요한 논리의 한 축을 형성한다.

국내에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2004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이하 공선법)이 최초이다. 이 법은 선거 국면에서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비방, 명예훼손 및 불법 선거

운동 방지를 위해 법률안 제 82조의 6항을 통해 ‘인터넷언론사<sup>1)</sup>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대한 실명제를 규정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었다.

공선법에서 인터넷실명제는 특수 국면에 작동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주요 사이트에 일상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6년 12월 22일에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항(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에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 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 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제 3자에 의하여 부정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발효된다. 현재 마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 등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

---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문화·시사 등의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 8조의 제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현재 약 8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표 1〉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입법화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논쟁들

반 대	찬 성
범죄방지 효과보다 개인정보침해라는 역기능이 더 심각 (한상희, 2003; 전응휘, 2005)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역행,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 (명재진, 2003; 김재범, 2005; 전창호, 2003; 황승훈, 2005; 허경미, 2006)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권리침해(개인 명예훼손, 폭력·외설적 정보 등) 방지
표현의 자유 제약 (한상희, 2003, 전응휘, 2005, 김성호, 2006)	표현의 자유의 한계(김혜경, 2006; 명재진, 2003; 강경근, 2005) — 타인의 인격권, 자유에 따르는 책임 등
명백한 검열(진보네트웍, 2003) —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	검열 아님(명재진, 2003; 장영수, 2006) —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음
통신의 비밀침해(이인호, 2003) —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헌법 제 18조 통신의 비밀)	게시판은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이 아님 (명재진, 2003; 강경근, 2005)
과잉금지원칙 위반(한상희, 2003) — 범죄수사 등의 국가 목적을 위해 모든 인터넷게시물에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내용규제에 해당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명재진, 2003; 강경근, 2005) — 게시판 실명제로 얻는 공익(타인의 명예권보호)이 실명제 제도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정보DB 이용은 정보통신법 제 24조 위반(한상희, 2003; 진보네트웍, 200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은 합법 (명재진, 2003; 허경미, 2006)
영장주의 위반(한상희, 2003) —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 법적 책임 이상을 요구함	영장주의 위반 아님(명재진, 2003; 강경근, 2005) — 영장주의 신체구속과 관련된 것이므로 실명확인절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인터넷 산업의 위축(김경달, 2005) — 네티즌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음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의 위축 초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명재진, 2003) — 토론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국어보호(욕설 등 무례한 언어사용 등 방지)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인호, 2003; 김영홍, 2003; 오병일, 2003) — 획일적인 의무화가 아닌 합법적인 비실명 공간과 공존되어야 하며 기업이나 이용자의 선택적인 문제로 맡겨야 함	여론의 지지(명재진, 2003) — 네이버, 야후 코리아 등의 온라인 폴에서 65%이상이 실명제 찬성

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방법은 또 명예훼손 피해자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종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심의제도를 방법으로 옮겨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와 관련 분쟁조정 사항 추가 등 강화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부, 2007).

### 3.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상관관계

#### 1) 익명성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입법논지는 익명성이 일탈행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간의 관계성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익명성(匿名性)이란 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한다(Wood & Smith, 2005). 실명, 연령, 성별, 신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익명성은 이중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동일한 한 실체를 이루기도 한다. 한 개인은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익명성의 이중적 측면을 모두 가로지르기도 한다.

익명성은 사이버스페이스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서구사회에서 익명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적 개인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에 익명과 가명, 그리고 필명과 가명을 사용하는 관습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익명성(*anonymity*)이라는 영어 단어의 출현은 1557년 등장한다(박정순, 2004).

이 개념은 산업화된 근대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용어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대중사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형성된 익명적 공동체인 대중사회는 봉건사회가 갖고 있던 혈연, 계급, 신분, 종교와 같은 사회규범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했다. 익명적 대중사회의 등장에 대해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 인간관계, 도

덕률 등이 붕괴된다고 보았다. 전통이 해체된 익명적 사회관계는 개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무너지고 사람들간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비판받았다(고영삼, 2001).

현대인은 마치 ‘호텔에 머무르는 투숙객’ 또는 ‘비행장 대합실 여행자’ 같이 객관화되어 있다. 즉, 현대세계 속의 인간상은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지닌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개념은 사라지고, 현실사회에서 개인은 ‘특질 없는 비인간’, 또는 학생, 교사, 노동자와 같은 추상화된 익명적인 존재로 머무른다(김광기, 2003). 현대인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고도로 추상화된 사회에 존재하는 익명화되고 추상적인 존재로 무채색처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현대시민사회는 낯선 사람들이 상이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익명적 공간을 연출한다.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연고에 기반한 전통사회와 다르게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들의 이익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성되는 인위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가 갖고 있던 구체성과 사회적 유대는 사라지고 대신에 무한한 역동성과 개방성을 얻게 된다(박정순, 2004).

이처럼 현대 시민사회에서 익명성은 대중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다. 대중사회에서 개인은 ‘고독한 군중’으로 존재하며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고, 군중심리에 편승하기 쉬워 도덕적으로 무책임해진다.

그러나 반면, 익명성은 시민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유는 익명적 현대사회에서 발현된다. 비인격성(*non-personality*), 익명성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준다. 개인적, 사적 관계가 의무와 구속을 낳는다면, 추상적이고 익명적인 관계는 자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에서 옆자리의 사람과 아무런 대화 없이 익명적 관계를 맺는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개인에게 소외가 아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김광기, 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대중사회에서 나타나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컴퓨터라는 기계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 특성을 포함한다. 대면적 관계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에 대한 물리적인 만남이 없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회적 실재감”이 상실된다. 그로 인해 사회 규범적 요소가 약화되고 보다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커뮤니케이터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Harasim, 1995). 비록 직접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현실공간에서 신체적 제약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자아의 모습을 실험해보는 정체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익명성은 사이버 담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신체가 보이지 않고 커뮤니케이터의 맥락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체성 기만과 은폐, 트롤링(trolling), 타인 명의의 도용과 같은 일탈적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프룸킨(Froomkin, 1995)은 익명성이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켜서 온라인 사기, 돈세탁, 조세·제조물책임·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다양한 일탈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일종의 행동탈억제효과(disinhibition effect) 때문이기도 하다. 설러(Suler, 2003)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긴장이 완화되고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며,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익명성의 심각한 역작용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탈인격화된 낮은 질의 담론이 양산되는 데 있다.

이처럼, 익명성은 이중적 효과를 낳지만, 익명성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1997년 11월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사용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Baird, Ramsower, & Rosenbaum, 2000, pp.99~101; 변순용, 2003). 그 중의 하나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원칙이다. 익명성이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해로운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익명성(*legitimate anonymity*)과 해롭거나 파괴적인 목적의 익명성(*illegitimate anonymity*)을 구분해야 하지만, 해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따라서 해악적인 익명성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익명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익명성 자체는 중립적이며 그것의 해악여부는 사후 일어난 일에 대한 사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익명성 자체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일탈행위 원인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이며 익명성의 한 단면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 2) 익명성과 일탈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익명성과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는 오래된 주제이다. 익명성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군중의 일탈행동연구에서 시작된 몰개성화이론 (*deindividuation theory*)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은 익명성이 도덕적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몰개성화란 개인의 특성이 매몰되어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회규범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가 탈억제상태 (*disinhibition*)로서 개인이 집단에 대해 갖는 책임의식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 상태는 행동통제를 잘 못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박정순, 2004).

몰개성화이론의 기반은 프랑스의 르봉(Le Bon, 1895)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나타난, 폭도를 방불케 하는 군중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1895년 군중심리학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군중의 난폭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익명적 함몰, 전염성, 그리고 암시성을 제시했다(박정순, 2004).

르봉의 연구는 짐바르도(Zimbardo, 1969)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짐바르도는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내적으로 구속됨이 없이 탈억제되어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이성식, 2004). 짐바르도는 실험연구에서 가운데 복면을 한 실험집단이 일상복을 입은 통제집단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다수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즉, 개인의 특성이 매몰될 때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사회규범을 벗어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고 이는 일탈적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다. 프렌티스와 로저스(Prentice & Rogers, 1982) 역시 익명의 상황은 '공적 자아의식'과 또한 사회적 자아의식'의 작용을 감소하게 만듦으로써 몰개성화와 탈억제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몰개성화이론에서 전개하는 인과적 추론이 경험영역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지는 않다. 황상민과 한규석(1999)의 논의에 따르면, 익명과 실명 설문조사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실명적이 되더라도 탈금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를 비교연구한 전통적 CMC이론들, 즉 사회적 단서결핍이론(*Reduced social*

*cues approach*), 사회 실재감이론(*social presence theory*), 미디어풍부성이론(*media richness theory*)도 같은 선상에 있다. 이 이론들은 사이버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대화와 다르게 대화자들의 외모, 지위, 기타 비언어적 사회단서가 부족해서 비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기 쉽고, 상대를 인지하는 수준이나 친밀도, 그리고 실재감이 더 낮아진다고 본다. 또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본다(Sproull & Kiesler, 1986, 1991). 그러나 실제로 이들 초기 이론들은 그 이론적 가정을 다룬 연구에서 효과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Postmes & Spears, 2002; Tanis & Postmes, 2005).

보다 최근에 제시된 자아의식이론(*self-awareness theory*)과 사회정체성이론(SIDE,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의 경우 익명성 자체가 반드시 일탈적이고 반규범적 행동을 부르는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아의식이론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는 고도의 자기집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적인 자아인식 혹은 자아각성(*private self-awareness*)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자신의 사회적 위상이나 독특성을 인지하는 공적인 자아인식(*public self-awareness*)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더 솔직하고 소신 있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조절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성식, 2004; 박정순, 2004).

사이버상에서의 익명성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한 사회정체성이론(SIDE)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반규범적 행위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에 관련된 역할과 집단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몰개성화 이론이 제기한 주장, 즉 익명성을 통한 몰개성화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general social norms*)에 대한 탈규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Christopherson, 2006; Sassenberge & Boss, 2003; Tanis & Postmes, 2005).

이들은 익명성이 반규범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의 특정 조건들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정체성, 시각적 익명성, 커뮤니케이터가 속한 집단의 특성 등이 이론에서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익명성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모두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의 익명성은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에 더 충실하게 함으로써 작업집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Christopherson, 2006).

이와 같이 이 이론은 사이버공간의 커뮤니케이터가 자신의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단서들을 여과시키긴 하지만, 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은 이러한 비언어적 특성과는 별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인식보다는 집단 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Christopherson, 2006). 예를 들어,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집단의 목소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한 사회의 성 문제에 대한 태도를 다양화하는 장점이 있다(McKernna & Bargh, 1998; Lea et al. 2001).

국내에서도 익명성과 일탈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인우·김미향(2000)의 논문에서는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일 때 발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명보다 익명일 때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동기적 논증을 더 많이 하고, 익명여부는 부정적 발언횟수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발언횟수에 대한 실명과 익명의 상관은 두 수치간에 매우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익명일 때 부정적 발언을 많이 한 대상자는 실명일 때도 많이 한다는 것과 익명일 때 적게 한 대상자는 실명일 때도 적게 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발언은 익명성보다 개인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의 게시판을 분석한 최영·이종민·김병철(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이 게시판이용에 실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토론 참여자의 수나 상호작용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게시판이용자의 익명 여부에 따른 메시지의 내용적 특징을 보면 우선 글의 주제 면에서 볼 때 익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정치나 사회분야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여부를 보면 실명을 요구할 경우 반말이 상당히 줄어들고 존댓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과 또는 사죄의 표현을 쓰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실명성이 상대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실험한 음수연(2005)의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제시되었다. 익명적 온라인 토론은 온라인 토론 참여자들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에 익명 토론방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공격적인 성격을 보이고, 실명과 닉네임 토론방에서 나타났던 중재적 성격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아, 익명 토론방의 여론형성 과정은 닉네임이나 실명 토론방에 비해 합의 지향적이기보다는 차별 지향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익명 토론방에서는 실명과 닉네임 토론방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토론과 무관한 내용의 글이 네 번이나 게시되어 익명이 보장되면 배설적인 게시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이 갖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병존한다. 나은영(2006)에 따르면,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해서 익명적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몰개성화되어 집단 정체성만 부각되는 집단간의 대립 또는 극화(*polarization*)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익명성이 언어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성식(2004)의 연구에서도 익명성이 사이버공간에서 공적 자아의식의 감소를 가져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플레이밍을 하게 유발할 수 있고, 또 사적 자아의식의 감소를 가져와 자기조절을 어렵게 하여 충동적이게 하고, 또 내적 규범의식을 약화하여 플레이밍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은 익명성과 일탈행위간의 관계를 단순화해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익명과 실명이라는 변수가 설명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사이버 문화나 행동에 작동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비방, 폭력 등의 일탈적 사회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익명성 그 자체보다는 참여자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거나(박민우·김미향, 2000; 황상민, 2002; 황상민, 2000), 욕설이나 비방,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은 그 행동이 유발

되는 특정상황의 조건에 좌우된다는 설명(황상민, 2002)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추적가능한 가명성 차원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법안은 범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범집행의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사이버 문화에 개선효과를 높지 않다.

#### 4. 정책목표와 정책 도구의 불일치, 추적가능한 가명성으로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한계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여러 의미로 통용되어왔다. 순수인터넷 실명제(정보검색이나 게시판이용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이용자의 본인 실명을 요구하는 제도), 인터넷게시판 실명표시제(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때 성명 및 주민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인터넷게시판 이용시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되, 실명은 게시판 운영자에게만 노출되고 게시판상으로는 ID를 사용해 활동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실명게시판 우대제(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실명게시판의 접근성이나 응답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경, 2005). 이 가운데 이번에 제도화된 방식은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로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본인확인만 되면, 자신의 가명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게시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가명적 커뮤니케이션(*pseudo communication*)을 허용하지만 그 행위자를 추후 법률적으로 추적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그 취지로 삼는다. 즉, 일탈행위나 범죄자에 대한 추적가능성으로서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국가차원에서 범죄행위자에 대한 추적에는 용이하지만, 사이버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현행 제도가 익명성 개념의 제한적인 차원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의 통제효율성만을 높이고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위협스런 현상을 낳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실명 확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른바 이 제도는 국가가 질서유지나 사회윤리의 보전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실명성은 이를 위한 담보조건이 된다(한상희, 2004).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행사로 제도화된 실명제는 일탈자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담보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실정에서 그 효과에 의문이 간다.

현재의 제도는 익명성의 유형 가운데 추적가능한 가명과 관련이 있다. 맥스(Gray Marx, 1999)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한다. 이름(*Legal name*), 주소(*Locatability*), 추적가능한 가명(*Traceable pseudonymity or pseudo-anonymity*), 추적불가능한 가명(*Untraceable pseudonymity*), 행동양식이나 외모의 형태(*Pattern knowledge*), 사회 범주(*Social categorization*)로서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종교 등, 그리고 자격 내지 무자격의 상징(*Symbols of eligibility/noneligibility*) 등이다.

여기서 추적가능한 가명은 이미 상당수 인터넷 회사들이 실명 인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가명에 해당하는 ID를 부여하고 있다. 개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의해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있어 별도의 실명제 없이도 상당부분 추적가능한 개인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지문날인을 갖춘 주민등록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개별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획득하는 필수 데이터 항목이다. 사실상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대상 사이트의 대부분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적가능성으로서 실명제는 정체성의 부재로 대표되는 익명성의 하위 차원의 하나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들의 대부분은 추적가능한 가명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군중처럼, 사이버 공간의 개인은 보호받는 개인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집단적 차원의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된다. 군중집회에서 연설자에게 상스러운 말을 무리 속에서 던지는 것과 같은 심리가 작동된다. 이것은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이버 문화의 문제이다. 실명을 사용할 경우 음란과 같은 범죄적 행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속한 표현이나 사회적 일탈과 같은 '하위가치'의 표현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억지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추적불가능한 가명의 경우는 다소 차원이 달라진다. 인터넷이용자들이 누출된 타자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거나 PC방과 같은 공중 IP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명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범죄의 예방 효과 역시 미비할 수 있다. 의도적 범법자들의 경우 추적불가능한 가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익명적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 1) 익명적 표현의 자유

헌법이나 법률 등 모든 법규범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다만, 서로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법규범이 필요하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입법은 기본권간 충돌이 예상되거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법률은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며, 불가피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sup>2)</sup>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논쟁을 일으키고 있다.<sup>3)</sup> 표현의 자유는

2) 헌재 1992. 4. 28. 90헌바24.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개인의 권리로서 인격의 자기완성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진리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여론형성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박용상, 2002).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1조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를 매개하는 매개체는 그 형태에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도의 의견 전파의 매개체로 인정되며, 이를 통한 정보는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헌법 제 21조 4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 2항)는 유보조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사회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자유 의 허용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국내에서 실명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위헌결정 및 법 제 71조 제 7호 중 제 53조 제 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에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3)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논란 항목은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명적 표현이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가 여부), 제 17조 사생활비밀과 자유(사생활 및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여부), 제 11조 평등권(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 제 15조 직업의 자유(실명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제 10조 행복추구권(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성권 등의 침해여부) 등이다.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자유에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sup>4)</sup>고 밝힌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했다는 점과 규제를 하더라도 헌법적 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분산되어 있고 공개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춘 인터넷에의 익명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2조<sup>5)</sup>와 19조<sup>6)</sup>에 근거해서 “수신자가 익명의 메시지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원하지 않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권리를 개인이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강한’ 권리로서 “온라인상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떠한 금지도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침해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aird, Ramsower, & Rosenbaum, 2000).

## 2)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해외 사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익명성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논쟁 역시 사회적 가치를 바

4) 현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2~632쪽.

5)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Baird, Ramsower, Rosenbaum, 2000).

6)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Baird, Ramsower, Rosenbaum, 2000).

라보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Marx, 2004). 클링(Kling, 2000)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치지향에 근거한 3가지 모델이 익명성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시각의 모델(*libertarian Model*)로 이는 미국의 기본적 인권(*bill of rights*)의 공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언론, 사상의 자유의 기본권에 기반한)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 모델의 옹호자들은 인터넷은 신뢰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흐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장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고려된다. 이 입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규범이 자체 필터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규범을 어기는 행위나 사람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축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익명성에 관한 어떤 검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민간기업 모델(*private enterprise model*)로 이 모델은 인터넷은 이윤창출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므로 인터넷이용자를 상품시장의 구매자나 판매자로 규정한다. 이 관점의 옹호자들은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한 이윤창출에 대한 관심으로 보안기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때문에 소비자 프라이버시나 정부의 규제 등에는 부차적인 관심을 둔다.

셋째, 통제주의 모델(*statist model*)로 인터넷 초기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이 시각은 온라인상의 사이버 범죄 같은 익명성 남용이 증가하면서 상업적 혹은 국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인터넷 감시체계의 강화를 주장한다. 이 입장은 법적 제재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벌을 주장하므로 시민(네티즌)의 행동은 사회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에 항상 부차적이다(Kling, 2000).

우리나라가 통제주의 모델에 가깝다면, 미국법원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가까운 판결을 내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인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윤명선, 2002). 그렇지만, 미국의 법원들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전재황 외, 2002).

우선, 오프라인상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sup>7)</sup>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002년 6월에도 연방대법원은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사건<sup>8)</sup>에서, 팜플렛의 발행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시조폐가 증보 제1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익명의 이익”(anonymity interests)을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전재황 외, 2002).

사이버 현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익명성이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인식하게 할 때,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First Amendment right*: 언론의 자유 조항)가 익명성 규제에 대해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온라인상의 익명의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법규를 통과시키려 할 때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Froomkin, 1999).

컴퓨터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명의를 도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컴퓨터시스템보호법(*Computer System Protection Act, 1996*)<sup>9)</sup>에 대해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이 법 규정이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통신함으로써 표현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차별 또는 학대를 받지 않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7) *Talley v. California*. Certiorari to the Appellate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 No. 154. Argued January 13-14, 1960. Decided March 7, 1960.

8) *Watchtower Bible &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et al. v. Village of Stratton et al.*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No. 00-1737. Argued February 26, 2002 - Decided June 17, 2002.

9) 컴퓨터시스템보호법(*Computer System Protection Act, 1998*)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메일박스, 홈페이지, 혹은 어떤 다른 전자 정보 저장 बैं크나 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지점(*point*)으로 데이터를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작동시키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개인의 이름을 조작했을 때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지방법원(ACLU v. Miller,<sup>10</sup> 1997)은 “표현자의 신원은 저술자가 자유롭게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당해 문건 내용상의 다른 요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단(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1995)을 인용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명의를 사용하는 자와 자기보호의 필요에서 허위명의를 사용하거나 인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는 법률로 판단된 것이다. 이 결정은,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따라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국가적 이익과 그 규제방식의 엄격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담고 있다(Froomkin, 1999; 한상희, 2003).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는 아니지만, 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 2002년 4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소비자의 도서 구매 기록은 고객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경찰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이것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고 판결해서 익명성의 권리를 지지했다(Tattered Cover, INC. v. The City of Thornton, 2002).<sup>11</sup>

2001년 7월 뉴저지 항소법원은 익명을 통한 온라인 의사표현의 권리 인정했다(Dendrite International v. Doe, 2001).<sup>12</sup> 법원은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야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게시자(John Does)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은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면 유죄판결 전이라도 ISP가 해당 이름을 공개할 수 있지만, 뉴저지 항소 법원은 이러한 절차와 증거 제시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10)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v. Miller.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977 F. Supp. 1228. Decided June 20, 1997.

11) Tattered Cover, INC., vs. The City of Thornton. Supreme Court, State of Colorado. No. 01SA205. April 8, 2002.

12)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John Doe No. 3.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Appellate Division 342 N.J. Super. 134. Decided July 11, 2001.

법적 전통이 다른 유럽에서도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정보보호분과’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온라인 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의 통합적 접근” (*Privacy on the internet: An integrated EU approach to online data protection*, 5063/00/EN/FINAL) 보고서<sup>13)</sup>에 따르면, ‘공공 영역에서의 익명성’에 대한 장에서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인터넷 익명성과 관련해서 ‘가상 정체성’(익명성)은 개인 정보의 보호와 그 오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이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sup>14)</sup>에서 라이덴버그와 슈와츠(Reidenberg & Schwartz, 2005)가 수행한 유럽 쪽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유럽 의회의 Directive 95/46/EC나 Directive 97/99/EC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와 입장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부분들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담론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3) [http://www.datenschutz-berlin.de/doc/eu/gruppe29/wp37\\_en/wp37en.htm](http://www.datenschutz-berlin.de/doc/eu/gruppe29/wp37_en/wp37en.htm)

14)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studies/regul\\_en.pdf](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studies/regul_en.pdf).

## 6. 익명성의 결정 주체

### 1) 사회규범에 대한 과도한 법규범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입법 원리의 하나인 보충성에 입각해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보충성의 원리란 “개인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공동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완식, 2006). 즉,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사회세력의 자율적인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할 경우 나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가 보충적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규제한다면 이는 보충성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규범을 지나치게 법규범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 통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경우,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낳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법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법이 기능하는 내용 영역은 시민사회의 자율기능을 침해하는 것 즉, 사회규범에 대한 국가의 법규범화로 나타나고 있다.

실명제가 정책 목표로 하는 지점은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현행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 형사처리가 가능한 일탈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를 견고자 한다. 또한 저속하거나 자극적 언어사용, 타자에 대한 불쾌감 조성과 같은 사이버 문화의 양태들은 개인의 실명 추적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억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것은 사업자의 수준에서 (행정지도의 방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상희, 2003). 사이버 문화의 영역 역시 시민사회의 자율적 판단과 사회적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입법원리로서 보충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기 결정권한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이용자의 고유 권리 즉,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내용범위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영성, 2001; 정재황 외, 2002), ‘자기정보통제권’(차맹진, 1991), ‘정보자기결정권’(김일환, 2001)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는 이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기본권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보호장치, 즉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 12조 제 3항 및 제 16조 제 2문), 주거의 자유보장(헌법 제 16조 제 1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헌법 제 17조), 그리고 통신비밀침해금지(헌법 제 18조) 등과 유사하지만 다소 다른 개념이다. 전통적인 사생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성낙인, 199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누구로부터 이용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인격요소들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되어 자신의 개인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다루는 정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다. 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처리되는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고,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비실명의 ID에 의한 기록과 일은 그 ID가 다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록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정재황, 2002).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자유 또는 익명적 거래 자유는 일반 개인이 국가나 다른 타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

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익명적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과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은 AASS가 발표한 내용, 즉 온라인 공동체는 익명성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된다. 직장, 대학, 기업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뉴스그룹이나 채팅방에서 조사 익명성에 대한 스스로의 원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이용자들간의 상호성이라고 밝혔다(Barid, Ramsower, & Rosenbaum, 2000; 변순용, 2003 재인용).

실제로 익명성은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이용자의 고유 권리이자 정보결정권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크다. 최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하게 논의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전자감시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같은 차원에서 익명성이 권리로서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1973년 미국 보건, 교육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가 발전시킨 공정한 정보실행에 관한 조례(Cod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s)에서 동의의 원칙(principle of informed consent)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Marx, 2004, pp. 159~160). 이 원칙은 정보 수집은 비밀리에 행해져서는 안 되며 개인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될지 인식하고 그것에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 7.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구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과 일탈행위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지 않다. 둘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추적가능한 가명성 시스템을 의미한다. 추적가능한 가명성은 이미 대다수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이버 문제들은 이러한 추적가능한 가명적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법적 도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포함된다. 국내 및 해외 주요 판례와 정책들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한 즉,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상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을 할 때 실명제로 인해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상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은 개인이 시민으로서 공적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정보추구 활동, 댓글 등을 통해 타자의 여론분포를 판단하는 여론지각활동, 뉴스를 읽거나, 정당 및 시민단체에 방문하는 행위,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타자와 토론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 포괄적인 사회참여와 개입활동이 전개되는 곳이다.

인터넷은 정치참여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 이것은 값싼 접속 및 이용비용과 빠른 속도, 그리고 지리적 포괄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공공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Grossman, 1995; Davis, 1999) 시켰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활동은 공적 광장(*public forum*)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원자화된 대중을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Grossman, 1995; Rheingold, 1993).

공적광장 또는 마을공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공간적 메타포는 의사소통 영역으로서 이 공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비유할 때 인용되는 “공적 광장론”(public forum),<sup>15)</sup>의 핵심은

15) 공적 광장론은 미국 판례상 확립된 것으로서 *Hague v. CIO*사건에서 비롯되어 *Perry Education Association v. Perry Local Educator's Association*<sup>1)</sup>에서 현재와 같은 공적광장론이 정립되었다. 공적 광장론(*public forum doctrine*)이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간·장소·방법상의 제한(*time, place, and manner regulation*)과 관련하여 정부가 유지·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적 광장

공공시설을 그 목적에 따라 공적 광장(도로, 인도,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 준공적 광장(학교, 도서관), 비공적 광장(교도소, 법정, 공항터미널, 정부청사 등) 등 공간적 특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러 차원의 광장 가운데, 공적 광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김배원, 2003).

물론, 현실공간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공적 광장론을 가상공간인 인터넷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 대안적 개념으로 일부학자들은 마을공원(*village green*) 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김배원, 2003; 박선영, 2004). 즉, 마을회관이나 동네모임의 공원처럼 그 동네에 거주하는 자(회원 내지는 네티즌)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인터넷은 시민이 공공문제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을 창출한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적인 공간(*public place*)은 시민들이 정치인을 상대로 자신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장이 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표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표현자의 차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공간이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될 때, 그 영향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과 위축으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의 본래 의미를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인터넷 공간의 자율성 위축은 이미 국내의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입법 규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잠재적 가치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치유에 치우쳐 국가가 과도하게 법률적 장치를 계속해서 고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상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다양한 법규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매년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신규 입법을 추진해왔다. 인터넷실명제도 그 예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화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raditional public forum*), 준공적광장(*semipublic forum or limited public forum*), 비공적광장(*nonpublic forum*)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장정도를 달리하는 이론을 말한다(김원배, 2003).

참고문헌

- 강경근(2005).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발표문. 2005. 8. 26, 1쪽.
- 강홍렬·윤준수·황경식(1997). 《고도정보사회의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정보통신연구원.
- 고영삼(2001). 익명성과 잠재성. 제 3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대화아카데미.
- 권영성(2001).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경달(2005).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국회 토론회 발표문. 2005. 11.
- 김광기(2003). 익명성, 추상성 그리고 근대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21집, 249~272쪽.
-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 2호, 83~124쪽.
- 김영석 외(2002). 《인터넷언론과 법》 한국언론재단.
- 김영홍(2003).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 국회보. 2003. 5, 87면.
- 김일환(2001).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 29집 제 3호, 87~112쪽.
- 김재범(2005).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어렵다. 국회보. 2005. 8, 109면.
- 나은영(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1호, 93~127쪽.
- 명재진(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CLIS Monthly*,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문서(2002). 인터넷 익명성과 전자상거래. 《통상정보연구》 4권 2호, 201~222쪽.
- 박선영(2002). 가상공간에서의 성표현의 자유와 법적 제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보고서(2002-14).
-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현암사.
- 박인우·김미향(2000).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 16권 제 4호, 91~106쪽.
- 박정순(2004).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심포지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및 공청회), 445~484쪽.
- 성낙인(199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 22집 제 3호, 253~288.

- 오병일 (2003). 인터넷게시판 '강제'실명제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2003. 5. 16면.
- 윤명선 (2002).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법》 한국 법제연구원.
- 윤해진 (2006).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된 익명성 계층적 개념 구조와 공격적인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 50권 6호, 305~332쪽.
- 음수연 (2005).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22호 통권38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제 16권 제 2호, 165~184.
- 이인호 (2003). 익명표현의 자유. 로앤비(<http://www.lawnb.com>), 2003. 4. (<http://www.jinbo.net/maybbs/view.php?db=www&code=nwnotice&n=178&page=1>).
- 이태희 (2006). 통신품위법 시행 10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에 관한 재검토.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분과 학술세미나 발표문.
- 전웅휘 (2005). 표현의 자유 위협, 사생활침해 우려. 국회보, 2005. 8. 112면.
- 전창호 (2003). 얼굴숨긴 사이버폭력: 방치할 수 없다. 국회보, 2003. 5. 85면.
- 정보통신부 (200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7년 3월 23일.
- 정재황 외 (2002).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
- 조동기 (1996).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정책연구》 18권, 29~55쪽.
- 조동기·김병준·조희경 (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진보네트워크. <http://cast.jinbo.net/news/show.php?docnbr=28024>.
- 차맹진 (1991).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이종민·김병철 (2002).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 참여자의 익명성과 토론 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권 2호, 115~158쪽.
-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5/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허경미 (2006).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 2호, 통권 제 66호, 2006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경식(2003). 사이버시대, 정체성의 위기인가. 《인간연구》 4호, 5~30쪽.
- 황상민(2000).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 \_\_\_\_\_ (2002). 인간행동의 규칙과 사이버 공간의 의미: 윤리 문제와 행동 통제의 탐색. 함께하는 시민행동(위음).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 \_\_\_\_\_ · 한규석 편저(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박영사.
- 황승흠(2005).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2005. 12. 19, 24면.
- 한국인터넷기업협회(2005). 안전한 인터넷구현을 위한 인터넷기업 자율규제 Action Plan. 2005. 9.
- Akdeniz, Y. (Spring 2002). Anonymity, democracy and cyberspace. *Social Research*, 69(1), 223~237.
- Baird, R. M., Ramsaower, R., Rosenbaum, S. E(ed.) (2000). *Cyber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 Daniel Littler(1996).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the expression and perception of social Identities. available at <http://www.newmediastudies.com/resourc2.htm>
- Danielson, P. (1996). Pseudonyms, mailbots, and virtual letterheads: The evolution of computer-mediated ethics. In C. Ess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p. 67~93).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EU(2000). Privacy on the internet: An integrated EU approach to on-line data protection. Working document,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wpdocs/2000/wp37en.pdf](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wpdocs/2000/wp37en.pdf)
- Froomkin, A. M. (1996). Flood control on the information ocean: Living with anonymity, digital cash, and distributed databases. *Pittsburgh Journal of Law and Commerce*, 395, 1~56.
- Froomkin, A. M. (1999). Legal issues in anonymity and pseudonymity. *The Information Society*, 15, 113~127.
- Froomkin, A. M. (1995). Anonymity and its enemies. *The Journal of Online Law*, available at <http://www.wm.edu/law/publication.jol/froomkin.html>.
- Grossman, Lawrence, (1995). *The electronic public*. New York: Penguin Books.

- Harasim, L. M. (1995). Networks: Networks as social space, In L. M. Harasim(ed.), *Global networks: Computers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Jonhson, D. G. and Miller, K. (1998). Anonymity, pseudonymity or inescapable identity on the net. *ACM SIGCAS Computers and Society*, 28(2), 37~38.
- Kiesler, S., & Sproull, L. (1992). Group decision mak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2, 92~123.
- Kling et al. (2000). Acces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in: Baird, R. M., Ramsower, R., & Rosenbaum, S. E(ed.), *Cyber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107~128.
- Kling, R., Lee, Y., Teich, A., & Frankel, M. (1999). Asses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Policy deliberations. *Information Society*, 15, 79~87.
- Lee, Gia B. (1996). Addressing anonymous messages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 2, 1~9.
- Marx, G. T. (1999). What's in a name? Some reflections on the sociology of anonymity.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99~112.
- Marx, G. T. (2004). Internet anonymity as a reflection of broader issues involving technologies and society. *Asian-Pacific Review*, 11(1), 142~165.
- McKenna, K. Y. A., & Barz, J. A. (1998). Coming out in the age of the Internet: Identity "demarginalization" though virtual group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81~694.
- Perr, Mike (1998). Deindividuation. available at <http://www.units.muohio.edu/psybersite/fans/deindividuation.shtml>.
- Postmes, T., & Spears, R. (2002). Behavior online: Does anonymous computer communication reduce gender inequ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8), 1073~1083.
- Prentice Dunn, S. & Rogers, R.W. (1982).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self awareness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03~513.
- Reidenberg, Joel R. & Schwartz, Paul M. (2005).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 Project paper commissioned from ARETE by Directorate General XV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studies/regul\\_en.pdf](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studies/regul_en.pdf).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f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Spears, R., & Lea, M. (1994). Social influence an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M. Lea (Ed.), *Contex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30~65. New York: Harvaester Wheatheaf.
- Tanis, Martin & Postmes, Tom (2005). Two faces of anonymity: Poradoxical effects of cues to identity in CMC. *Computer in Human Behavior*, 23, 955~970.
- Wood, Andrew F. & Mattew J. Smith (2005). *Online communication: Liking technology, identity, culture*,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주요판례]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v. Miller.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977 F. Supp. 1228. Decided June 20, 1997.
-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John Doe No. 3.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Appellate Diviion 342 N.J. Super. 134. Decided July 11, 2001.
- Talley v. California. Certiorari to the Appellate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 No. 154. Argued January 13~14, 1960. Decided March 7, 1960.
- Tattered Cover, INC. v. The City of Thornton. Supreme Court, State of Colorado. No. 01SA205. April 8, 2002.
- Watchtower Bible &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et al. v. Village of Stratton et al.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No. 00-1737. Argued February 26, 2002 - Decided June 17, 2002
- 헌재 1992. 4. 28. 90헌마24.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2-632.

## Critical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real-name system on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Exploring right of anonymous communication

Yong-suk Hwang

At the point whe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s of the Internet, which means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is known on the Net, is enacted, the present study explored problems of the legisl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Major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of all, in spite of the assumption of high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nonymity and the deviation from social norms on the Net, existing empirical studies have not supported the systematical evidenc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econd, there is a conceptual inconsistency between the policy effect sought by the regulation and the instrumental implementation of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s of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could be seen as institutionalized base on traceable anonymity (anonymity that refers to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e.g., registered user name) among a variety of levels of anonymity. However, because most of Internet providers have already implemented such a system voluntarily, negative events that occurred in cyber culture due to anonymity have almost taken place in situations in which one can trace the anonymity. Accordingly,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is useful for tracing cyber crime, but the effect of the legislation might not be helpful in improvement of cyber culture.

Third,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is a part of freedom of speech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Foreign legal cases and polici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protection of anonymity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Fourth, the right to expose personal identity, that is, to decide anonymity on the cyber space should be entitled to particular online communities or individuals.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the supplementary role to law and the self-decision toward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he state to exert authoritative power by legalizing the real name system.

- (1) 최초투고 : 2007. 4. 3.
- (2) 최종수정본 입고 : 2007. 5. 18.
- (3) 최종게재결정 : 2007. 5. 23.
- (4) 참고문헌 수 : 71개